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필모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4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4. 27.

발 의 자 : 정필모 의원

찬 성 자 : 강득구 · 강민정 · 강병원

강선우 · 강준현 · 강훈식

고민정 · 고영인 · 고용진

권인숙 · 권철승 · 기동민

김경만 · 김경협 · 김교홍

김남국 · 김두관 · 김민기

김민석 · 김민철 · 김병기

김병욱 · 김병주 · 김상희

김성주 · 김성환 · 김수홍

김승남 · 김승원 · 김영배

김영주 · 김영진 · 김영호

김용민 · 김원이 · 김윤덕

김의겸 · 김정호 · 김종민

김주영 · 김진표 · 김철민

김태년 · 김한정 · 김희재

남인순 · 노웅래 · 도종환

문정복 · 맹성규 · 문진석

민병덕 · 민홍철 · 박광온

박범계 · 박상혁 · 박성준

박영순 · 박완주 · 박용진

박재호 · 박 정 · 박주민

박찬대 · 박홍근 · 백혜련
변재일 · 서동용 · 서삼석
서영교 · 서영석 · 설 훈
소병철 · 소병훈 · 송갑석
송기현 · 송영길 · 송옥주
송재호 · 신동근 · 신영대
신정훈 · 신현영 · 안규백
안민석 · 안호영 · 양경숙
양기대 · 양이원영 · 어기구
오기형 · 오영환 · 오영훈
우상호 · 우원식 · 위성곤
유기홍 · 유동수 · 유정주
윤건영 · 윤관석 · 윤영덕
윤영찬 · 윤재갑 · 윤준병
윤희중 · 윤후덕 · 이개호
이광재 · 이동주 · 이병훈
이상민 · 이상현 · 이성만
이소영 · 이수진 · 이수진^(비)
이용빈 · 이용선 · 이용우
이원욱 · 이원택 · 이인영
이장섭 · 이재정 · 이정문
이탄희 · 이학영 · 이해식
이형석 · 인재근 · 임오경
임종성 · 임호선 · 장경태
장철민 · 전용기 · 전재수
전해철 · 전해숙 · 정성호
정일영 · 정청래 · 정춘숙

정태호 · 조승래 · 조오섭
조응천 · 조정식 · 주철현
진선미 · 진성준 · 천준호
최강욱 · 최기상 · 최인호
최종윤 · 최혜영 · 한병도
한정애 · 한준호 · 허 영
허종식 · 홍기원 · 홍성국
홍영표 · 홍익표 · 홍정민
황운하 · 황 희 의원
(17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· 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,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46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42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4항 중 “理事會의”를 “운영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제4호 중 “理事長”을 “운영위원장”으로, “理事”를 “운영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理事會의”를 “운영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46조의 제목 중 “理事會의”를 “운영위원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理事會를”을 “운영위원회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理事會는 理事長을”을 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”로, “이사 11人으로”를 “운영위원 25명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운영위원은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12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.

제46조제4항 중 “理事長은 理事會에서”를 “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理事長”을 “운영위원장”으로, “理事는 非常任으로 한다”를 “운영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理事長은 理事會를”을 “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理事會는 在籍理事”를 “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

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8항) 중 “理事長이”를 “운영위원장이”로, “理事가”를 “운영위원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(중전의 제9항) 중 “이사회”를 각각 “운영위원회의”로 한다.

다만,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49조제1항제7호의2에 규정된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,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운영위원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후보자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공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사장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다.

제47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“理事의”를 각각 “운영위원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理事의”를 “운영위원의”로, “補闕理事를”을 “보궐 운영위원을”로, “補闕理事의”를 “보궐 운영위원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理事는”을 “운영위원은”으로 한다.

제48조의 제목 중 “이사의”를 “운영위원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사가”를 “운영위원이”로 한다.

제49조의 제목 중 “理事會의”를 “운영위원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理事會는”을 “운영위원회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5호 중 “理事會가”

를 “운영위원회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理事會는”을 “운영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7의2.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

제50조제2항 전단 중 “理事會의”를 “운영위원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理事會가”를 “운영위원회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理事會의”를 “운영위원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理事會의”를 “운영위원회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理事에”를 “운영위원에”로 한다.

제51조제5항 중 “理事會에”를 “운영위원회에”로 한다.

제53조의 제목 중 “이사”를 “운영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이사·집행기관”을 “운영위원·집행기관”으로, “이사는”을 “운영위원은”으로, “이사회”를 “운영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54조제3항 중 “理事會의”를 “운영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57조제1항 전단 중 “理事會의”를 “운영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58조제1항 중 “理事會의”를 “운영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8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국방송공사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
규정에 따라 임명된 사장의 임기는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
임기를 보장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第43條(設置등) ① ~ ③ (생략) ④ 公社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<u>理事會의</u> 議決을 거쳐 地域放送局을 둘 수 있다. ⑤ ~ ⑧ (생략) 第45條(定款의 기재사항) ① 公社의 定款에는 다음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公社의 조직과 <u>理事長</u>·<u>理事</u>·<u>執行機關</u> 및 職員에 관한 사항 5. <u>理事會의</u> 운영에 관한 사항 6. ~ 13. (생략) ② ~ ④ (생략) 第46條(<u>理事會의</u> 設置 및 운영등) ① 公社는 公社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公社 경영에 관한 最高議決機關으로 <u>理事會</u>를 둔다. ② <u>理事會</u>는 <u>理事長</u>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.	第43條(設置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<u>운영위원회의</u>----- -----. ⑤ ~ ⑧ (현행과 같음) 第45條(定款의 기재사항) ①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<u>운영위원장</u>-<u>운영위원</u>----- ----- 5. <u>운영위원회의</u>----- 6. ~ 1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第46條(<u>운영위원회의</u> 設置 및 운영등) ① ----- ----- -----<u>운영위원회를</u>-----. ② <u>운영위원회</u>는 <u>운영위원장</u>을 -----<u>운영위원 25명으로</u>-----.

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.

④ 理事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.

⑤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는 非常任으로 한다.

⑥ 理事長은 理事會를 소집하고 그 會議의 議長이 된다.

⑦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③ 운영위원은 「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.

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-----.

⑤ 운영위원장----- 운영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
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-----.

⑦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-----다. 다만,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49조제1항제7호의2에 규정된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,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운영위원회의 사장 임명제청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후보자 임명제청에 관한

⑧ 理事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理事가 그 직무를 代行한다.

⑨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第47條(理事의 任期) ①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.

② 理事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補闕理事를 任命하여야 하며, 補闕理事의 任期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任期가 만료된 理事는 그 후임자가 任命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.

사항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공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사장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다.

⑨ 운영위원장이-----

--운영위원이-----.
⑩ 운영위원회의-----
---. -----
-----운영위원회의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第47條(운영위원의 任期) ① 운영위원의-----.

② 운영위원의-----

-----보궐 운영위원을-----
보궐 운영위원의-----
-----.

③ -----운영위원은-----

-----.

제48조(이사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.

1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第49條(理事會의 機能) ① 理事會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審議・議決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8. ~ 14. (생략)

15. 그 밖에 理事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理事會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監事에게 公社에 대한 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.

第50條(執行機關) ① (생략)

② 社長은 理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.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.

③ 理事會가 제2항에 따라 社長을 提請하는 때에는 그 提請

제48조(운영위원의 결격사유) ①

-----운영위원
인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第49條(운영위원회의 機能) ① 운영위원회는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의2.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

8. ~ 14. (현행과 같음)

15. -----운영위원회가-----

② 운영위원회는-----

-----.

第50條(執行機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운영위원회의-----
-----.
-----.

③ 운영위원회가-----

基準과 提請事由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④ 監事는 理事會의 提請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任命한다.

⑤ 副社長과 本部長은 社長이 任命한다. 다만, 副社長을 任命할 경우에는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.

⑥ 執行機關의 任期 및 缺格事由에 대하여는 第47條 및 第48條의 理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.

第51條(執行機關의 직무등) ① ~

④ (생략)

⑤ 社長과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第53條(이사·집행기관과 職員의 직무상 의무) ① 공사의 이사·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할 수 없으며, 이사는 본인 또는 「민법」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.

②·③ (생략)

-----.

④ -----운영위원회의-----
-----.

⑤ -----
-----.
-----운영위원회의-----
-----.

⑥ -----

-----운영위원에-----
-----.

第51條(執行機關의 직무등) ① ~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운영위원회
에-----.

第53條(운영위원·집행기관과 職員의 직무상 의무) ① -----
운영위원-----
-----운영위원
은-----

-----운영위원회의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第54條(業務) ①・② (생략)

③ 公社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法人에 대하여 그 資本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資할 수 있다.

第57條(豫算의 編成) ① 公社의 豫算은 社長이 編成하고 理事會의 議決로 확정된다. 豫算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,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豫算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(생략)

第58條(運營計劃의 수립) ① 公社의 社長은 제57조에 따라 豫算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해당연도의 豫算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第87條(시청자위원회) ① (생략)

1. ~ 3. (생략)

第54條(業務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운영위원회의-----

-----.

第57條(豫算의 編成) ① -----
-----운영위원회의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第58條(運營計劃의 수립) ① ----
-----운영위원회의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第87條(시청자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4.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
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